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람



제868호 2023. 12. 28.(목)

령 훈 ○ 사천시 훈령 458호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1 ○ 사천시 훈령 459호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2 고시 ○ 사천시 고시 제2023-3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3-318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인가 고시------9 ○ 사천시 고시 제2023-3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사항 고시 시천시 어촌뉴달200시업(구우진항) 시행계획 변경(1차) 수립 고시 12 ○ 사천시 고시 제2023-325호 ○ 사천시 고시 제2023-326호 시천시 어촌뉴달300시업(중촌항) 시행계획 변경(1차) 수립 고시··· 15 공 卫 ○ 사천시 공고 제2023-1778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18 ○ 사천시 공고 제2023-1793호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20 ○ 사천시 공고 제2023-1794호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44 ○ 사천시 공고 제2023-1800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3 ○ 사천시 공고 제2023-1801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행정예고-----75 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제868호

사천시 훈령 제458호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2월 28일

사천시장 박동식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 수리공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868호

사천시 훈령 제459호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2월 28일

사천시장 박동식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1.>

<u>공무직근로자 정수표</u>(제6조제5항 관련)

				단	· 순 노 무 원	<u> </u>		г э	하 거
	부 서 별	계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①	현장지도 단속감시 상담인부 ②	자격을 요하는 인 부 ③	단순잡역 조무인부 ④	도 로 보수원 ⑤	환 경 미화원 ⑥
	총 계	228	164	2	6	39	117	10	54
	소 계	128	118	2	6	20	90	10	
	기획예산담당관	1	1				1		
	행 정 과	11	11			4	7		
	주 민 복 지 과	9	9			3	6		
	노 인 장 애 인 과	5	5				5		
	여 성 가 족 과	16	16	1		11	4		
	민 원 과	2	2				2		
	세 무 과	3	3				3		
본	회 계 과	1	1				1		
	우 주 항 공 과	6	6			1	5		
	지 역 경 제 과	2	2				2		
÷1	정 보 통 신 과	23	23				23		
청	토 지 관 리 과	2	2				2		
	문 화 체 육 과	7	7				7		
	관 광 진 흥 과	3	3				3		
	환 경 보 호 과	1	1				1		
	교통행정과	7	7		5		2		
	녹 지 공 원 과	12	12			1	11		
	도 시 과	2	2		1		1		
	건 설 과	2	2	1			2	10	
	도 로 과	13	3	1			2	10	
의 회	소계	1	1				1		
	의회사무국	1	1			10	1		
직 소	소계	42	42			19	23		
직 속 기 관	보 건 소	19	19			19			
光	농 업 기 술 센 터	23	23				23		
사	소 계	57	3				3		54
사 업 소	환 경 사 업 소								54
7:	상 하 수 도 사 업 소	3	3				3		

제868호

사천시 훈령 제460호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개정 2024.1.1.>

청경의 배치 목적 및 일반업무(제3조제4항 관련)

부 서 별	배치목적	일 반 업 무		
행 정 과	청사 경비	○ 청사 경비 및 점검 등		
노인장애인과	시설물 경비	○ 노인복지회관 경비 및 점검 등		
여성가족과	시설물 경비	○ 종합사회복지관 경비 및 점검 등		
민 원 과	청사 경비	○ 민원실 경비 및 점검 등		
문화체육과	시설물 경비	○ 문화·체육 시설물 경비 및 점검 등		
녹지공원과	시설물 경비	○ 자연휴양림 시설물 경비 및 점검 등		
재난안전과	시설물 경비	○ 재난 관련 시설물 경비 및 점검 등		
의회사무국	청사 경비	○ 청사 경비 및 점검 등		
평생학습센터	청사 경비	○ 청사 경비 및 점검 등		
환경사업소	시설물 경비	○ 사업소 시설물 경비 및 점검 등		
사 천 읍	청사 경비	○ 청사 경비 및 점검 등		
벌 용 동	청사 경비	○ 청사 경비 및 점검 등		

[별표 1-2] <개정 2024.1.1.>

부서별 청원경찰 정수(제3조의2 관련)

	부 서 별	계	청사 경비	시설물 경비
	총 계	30	11	19
	소 계	25	7	18
	행 정 과	6	6	
	노 인 장 애 인 과	1		1
ㅂㅋ	여 성 가 족 과	1		1
본 청	민 원 과	1	1	
	문 화 체 육 과	10		10
	녹 지 공 원 과	1		1
	재 난 안 전 과	5		5
의 회	소 계	1	1	
ㅋ 꾀	의 회 사 무 국	1	1	
	소 계	2	1	1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1	1	
	환 경 사 업 소	1		1
	소 계	2	2	
읍면동	사 천 읍	1	1	
	벌 용 동	1	1	

제868호

사천시 고시 제2023-3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km)
현 구역	시도	14호선	시도14호선	용현면 주문리	1,292m ²	용현면 주문리 160-1	용현면 주문리 162	-	0.087km
변경 구역	시도	14호선	시도14호선	용현면 주문리	1,130m ²	용현면 주문리 160-1	용현면 주문리 162	-	0.087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기개설된 시도14호선을 현지여건에 맞추어 선형 일부 변경
-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시행완료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별도첨부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사업인정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사천시 도로과

제868호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OIN ILU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 지	결정 일	비고
당초	중로	3	40	12	집산 도로	583	중로 1-35호선	주문리 300-4	일반 도로	-	2011. 08.04	사천시고시 2011-89
변경	중로	3	40	12	집산 도로	583	중로 1-35호선	주문리 300-4	일반 도로	-	2011. 08.04	사천시고시 2011-89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 3-40호선	중로 3-40호선	● 선형 일부 변경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현지 여건에 맞추어 선형을 일부 변경.

제868호

사천시 고시 제2023-318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인가 고시

사천시고시 제2020-269호(2020.8.6.)로 최초 시행계획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제2023-305호(2023.12.21.)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완료되어「농어촌정비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 1. 사업의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2. 사업의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

3. 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단위: 백만원)

제868호

4. 주요사업내용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시행계획	비고
	합 계		8,000	
기초	은 생 활 기 반 확 충		4,244	
	사천활력어울림센터	시니어카페, 키즈놀이방, 어울림 빨래방, 대회의실, 강의실, 사무실	3,952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	주차장(38면), 조경식재 등	292	
지역			1,915	
	지역공동체 놀이터 조성	어린이정원, 산책로정비 등	1,383	
	Wing-Wing특화거리 조성	정의1길, 읍내로 정비	531	
지역	후역 량 강 화		769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 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등	주민/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238	
	홍보마케팅	McFood 페스티벌 개최 등	142	
	컨설팅	커뮤니티 경관디자인 등	251	
	정보화	스마트 두레공동체 앱 개발 등	23	
	마을경영지원	창업지원, 센터운영지원, 회의비 등	115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관리비 등	1,073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7년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68호

사천시 고시 제 2023-324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12. 28.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승인번호	목 적	이 뒤	면적(㎡)	~01717L	피 승	인자	шП
(연월일)		위 치	연석(# /	승인기간	주 소	성 명	비고
2023-28 (2023.12.21.)	갯섬항 방파제 설치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선	2,912 (직접)	2023.12.21.~ 2053.12.20.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사항

허가번호	목 적	OI T I	머저/㎡)	=1717171	피형	· 가자	ш¬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면적(㎡) 허가기간		성 명	비고
2023-8 (2023.12.26.)	낚시터업용 부교	사천시 실안동 산31-2번지선	1,513.6 (직접 345.6, 간접 1,168.0)	2024.03.13.~ 2028.11.30.	사천시 실안동 산분령어촌계	산분령어촌계 (어촌계장 김동열)	기간 연장
2023-9 (2023.12.26.)	낚시터업용 부교	사천시 대포동 457번지선	2,888.8 (직접 712.8, 간접 2,176.0)	2024.03.13.~ 2028.11.30.	사천시 대포동 대포어촌계	대포어촌계 (어촌계장 정강주)	기간 연장
2023-10 (2023.12.26.)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위치표시용 부표	사천시 송포동 1526-12번지선	12 (직접)	2024.01.01.~ 2026.12.31.	사천시 해안관광로 339	대한수상안전 교육협회 경남지부 (어촌계장 강상헌)	기간 연장

제868호

사천시 고시 제2023-325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 시행계획 변경(1차)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3년-291호(2023.12.7.)로 최초 수립된 『사천시 어촌뉴딜 300사업(구우진항) 시행계획』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1차)수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 1. 사업의 명칭 :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
- 2. 사업목적
 - 자혜리 어촌마을 주민들의 노후화된 거주 및 어항환경 개선
 -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한 체류형 해안관광 특화방안 마련
 -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일원(구우진항)
- 4. 사업기간 : (당초) 2021년 ~ 2023년(3년간) (변경) 2021년 ~ 2024년(4년간)
- 5.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국비 7,000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시비 2,100백만원

제868호

6. 사업내용

그ㅂ	기본계획	시행계획 (최초)	시체계하면건(1키.)	н) ¬
구분	('23.12.07)	('23.12.07)	시행계획변경(1차)	비고
フモ	- 방파제 조성 - 도로안전 및 어항정비	방파제 조성도로안전 및 어항정비	방파제 조성도로안전 및 어항정비	
공통	- 부잔교 설치	- 부잔교 설치	- 부잔교 설치	
사업	- 공동작업장설치	- 공동작업장설치	- 공동작업장설치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특화	- 종합안내판	- 종합안내판	- 종합안내판	
	- 구우진 캠핑장조성	- 구우진 캠핑장조성	- 구우진 캠핑장조성	
사업	- 정주어항 야간안전조명	- 정주어항 야간안전조명	- 정주어항 야간안전조명	
S/W	- 역량강화	- 역량강화	- 역량강화	
사업	- 지역협의체 운영 등	- 지역협의체 운영 등	- 지역협의체 운영 등	
기타	- 기본계획, 실시설계	- 기본계획, 실시설계	- 기본계획, 실시설계	
/14	- 위탁수수료(감리비 포함)	- 위탁수수료(감리비 포함)	- 위탁수수료(감리비 포함)	

-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7.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위탁기본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	토지	소재			지적면적	편입면적			
련 번 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시작단적 (m²)	원합단적 (m²)	소유자	비고	
1	서포	자혜	산23-2 0	도	27,767	5	경상남도	통합알리미	
2	서포	자혜	20-4	도	2,827	350	국(국토교통부)	교행도로안전 및	
3	서포	자혜	20-2	임	990	100	국(기획재정부)	어항보강정비	

9. 기타사항: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5)와 한국 농어촌공사 사천지사(☎055-851-8146)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시행계획변경(1차) 세부내역

ュ			기본계획			시행계획((최종)	시행계획변경	경(1차)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이코나나사	방파제 (방파제 조성)	L = 70m, B=7m (회차로 A=310m²)	4,430	L = 70m, B=7m (회차로 A=310㎡)	4,430	L = 70m, B=7m (회차로 A=310㎡)	4,430	
<u>1</u> 공	어항	외곽시설	방조제 (교행도로안전 및 어항보강)	L = 90m, B=7.5m L = 85m, B=7.5m	801	L = 90m, B=7.5m L = 85m, B=7.5m	801	L = 90m, B=7.5m L = 105m, B=7.5m	801	
고통사업	시설 정비	계류시설	부잔교 (바다부잔교 설치)	L=100m, B=5.2m	493	L=100m, B=5.2m	493	L=100m, B=5.2m	493	
업		기능편익시설	소규모 공동작업장	A=969m²	620	A=969m²	620	A=969m²	620	
		기궁원칙시절	대규모 공동작업장	A=4,554m ²	1,166	A=4,554m ²	1,166	A=4,554m ²	1,166	
			1 소계		7,510		7,510		7,510	
		-1 -1 -1 -1	종합안내판 (통합알리미 설치)	1개소	53	1개소	53	1개소	53	
2 투 화	관광 진흥	관광레저	캠핑장 (구우진 캠핑장 조성)	A=4,205m²	502 <자부담 126>	A=4,205m²	502 <자부담 126>	A=4,205m²	502 <자부담 126>	
화 사 업	진흥	경관개선	경관시설 (정주어항 야간안전조명)	가로등 17개소 보안등 2개소	206	가로등 17개소 보안등 2개소	206	가로등 17개소 보안등 2개소	206	
ᆸ		경천계선	경관시설 (어업활동로 보수 및 개선)	-	-	-	-	-	_	
			② 소계		761		761		761	
	GH	교육	워크숍, 교육 등	1식	124	1식	124	1식	124	
3 S	역량 강화		브랜드(캠핑), 지역축제 개발	1식	96	1식	96	1식	96	
W		컨설팅	사회적 기업교육 및 등록	1식	39	1식	39	1식	39	
사		협의체	운영비	1식	9	1식	9	1식	9	
업	고용	용창출	사무장 채용	1식	32	1식	32	1식	32	
			③ 소 계		300		300		300	
	선	계비	기본계획	1식	169	1식	169	1식	169	
4 사		· II = I	실시설계	1식	543	1식	543	1식	543	
시 업	ሃታô	법관리	공사감리	1식	541	1식	541	1식	541	
시			사업관리	1식	103	1식	103	1식	103	
원	기티	경비 경비	기타 경비	1식	73	1식	73	1식	73	
			4 소계		1,429		1,429		1,429	
		총시	-업비 (11+2+3+4)		10,000		10,000		10,000	

제868호

사천시 고시 제2023-326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중촌항) 시행계획 변경(1차)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년-203호(2022.9.27.)로 최초 수립된 『사천시 어촌 뉴딜300사업(중촌항) 시행계획』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1차) 수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중촌항)
-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 지역을 연계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항 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3. 사업비 소요액 : 7,304백만원(국비5,098, 도비656, 시비1,529, 자부담21)
-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동·북측), 굴박신작업장 부지조성, 부잔교 설치, 경사식 선착장 설치, 호안정비, 해수유통구 정비 조형물 설치, CCTV 설치, 안전조명(보안등) 설치, 굴박신 작업장 신축 및 고도화시설 설치

제868호

- 특화사업: 다목적센터 신축, 쉼터 설치, 도로 포장 정비, 안내판 설치
- S/W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마을 브랜드 개발 등 나. 사업의 구역: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6번지 중촌항 일원
- **5. 사업예정기간: (당초)** 2020년~2023년(4년간)

(변경) 2020년~2024년(5년간)

- 6. 사업의 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배후 어촌 및 어항의 기능 향상
 - 잠재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의 활력 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7.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 9. 기 타

시행계획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6)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사 천 시 궁 보

제868호

○ 편입토지조서(중촌항)

of al	토지	소재	ין ען	-2) II	지적면적	편입면적	x Ŏ →]	ul –
연번	읍·면	동・리	지번	지목	(m²)	(m²)	소유자	비고
1	서포면	자혜리	908-26	잡	949	949	사천시	CCTV, 가로등 다목적센터
2	서포면	자혜리	908-21	도	4,580	3,000	국토교통부	도로 포장 정비
3	서포면	자혜리	908-27	제	260	20	사천시	CCTV, 가로등
4	서포면	자혜리	산80-1	도	24,222	10	경상남도	
5	서포면	자혜리	1139-45	도	5,310	10	경상남도	
6	서포면	자혜리	산72-4	도	3,885	10	사천시	
7	서포면	자혜리	1099-1	대	411	10	사천시	안내판설치
8	서포면	자혜리	산69-3	임	594	10	사천시	인대관결시
9	서포면	자혜리	991	도	619	10	사천시	
10	서포면	자혜리	산137-3	도	1,873	10	사천시	
11	서포면	자혜리	산153-7	도	514	10	사천시	

제868호

사천시 공고 제2023-1778호

[√]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2023년 12월 28일

사 천시장

도로의 종류	구 지방도	노선명	100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40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68-1 (60m 구간)
기간	2024년 1월 1일(월) ~ 2024	4년 1월 28 <u>9</u>	일(일)

이유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사업(암거BOX)추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그 밖의 사항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740번지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사 천 시 궁 보

제868호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제868호

사천시 공고 제2023-1793호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시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노룡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 1. 사 업 명: 2022년 노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412필지, 394,878.1 m²
- 4. 지적확정조서: 붙임문서 참조
- 5.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 6. 공람장소: 사천시 토지관리과
-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8. 문의처: 사천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2, 2843, 2378, 2355)

					5	∟룡/	2 지	적재	조사	·지구	확진	정조	서		
		3	등전 토	지			호	학정 토	지		면적	증감		소유자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m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m²)	증가 (m²)	감소 (m²)	성명	주소	비고
1	ı	노룡동	17-2	도로	4,479.0	ı	노룡동	17-2	도로	4,677.0	198.0	0.0	국(국토교 통부)		
2	1	노룡동	26	전	4,394.0	-	노룡동	26	전	4,394.0	0.0	0.0	윤*혜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 ***동 ***호	
3	1	노룡동	26-1	전	4,318.0	-	노룡동	26-1	전	4,318.0	0.0	0.0	안*준	경상남도 진주시 천수로 *** ***동 ****호	
4	-	노룡동	26-4	전	291.0	-	노룡동	26-4	전	291.0	0.0	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5	-	노룡동	26-5	도로	251.0	-	노룡동	26-5	도로	41.0	0.0	210.0	국(국토교 통부)		
6	-	노룡동	28	답	1,152.0	-	노룡동	28	답	1,152.0	0.0	0.0	임*순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7	-	노룡동	28-2	답	1,251.0	-	노룡동	28-2	답	1,258.3	7.3	0.0	윤*호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번길 *-*	
8	-	노룡동	29	답	977.0	-	노룡동	29	답	969.7	0.0	7.3	윤*호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번길 *-*	
9	-	노룡동	29-1	답	777.0	-	노룡동	29-1	답	777.0	0.0	0.0	강*영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	
10	-	노룡동	29-2	답	642.0	-	노룡동	29-2	답	642.0	0.0	0.0	박*열	경상남도 사천시 대례길 **-*	
11	-	노룡동	30	답	523.0	-	노룡동	30	답	523.0	0.0	0.0	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12	-	노룡동	30-1	답	420.0	-	노룡동	30-1	답	420.0	0.0	0.0	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13	-	노룡동	30-2	답	204.0	-	노룡동	30-2	답	204.0	0.0	0.0	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14	-	노룡동	32	답	245.0	-	노룡동	32	답	245.0	0.0	0.0	이*현	경상남도 사천시 노대길 ***	
15	-	노룡동	32-1	답	556.0	ı	노룡동	32-1	답	556.0	0.0	0.0	김*국(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임내길 ** ***동 ***호	

1 1		1 1	ı	I	l I				I			I	ı	l I	1
16	-	노룡동	32-2	답	910.0	-	노룡동	32-2	답	910.0	0.0	0.0	조*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 ***동 ****호	
17	-	노룡동	32-3	도로	209.0	-	노룡동	32-3	도로	182.7	0.0	26.3	국(농림축 산식품부)		
18	-	노룡동	33	답	780.0	-	노룡동	33	답	780.0	0.0	0.0	합천이씨참 지공파백천 종중	백천동 ***	
19	-	노룡동	33-1	답	691.0	-	노룡동	33-1	답	663.6	0.0	27.4	조*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 ***동 ****호	
20	-	노룡동	33-2	답	522.0	-	노룡동	33-2	답	522.0	0.0	0.0	송*옥	사천군 용현면 덕곡리 ***	
								34	구거	1,875.1					
								34-1	구거	105.5					\dashv
								34-2	구거	20.6			고(노리추		
21	-	노룡동	34	구거 	2,167.0	-	노룡동	34-3	구거	54.2	127.4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34-4	구거	156.5					
								34-5	구거	42.3					
								34-6	구거	40.2					
22	-	노룡동	35	답	429.0	-	노룡동	35	답	429.0	0.0	0.0	신*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3	-	노룡동	35-1	답	755.0	-	노룡동	35-1	답	755.0	0.0	0.0	신*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4	-	노룡동	35-2	답	895.0	-	노룡동	35-2	답	895.0	0.0	0.0	임*영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_** ****호	
25	-	노룡동	35-3	답	579.0	-	노룡동	35-3	답	579.0	0.0	0.0	임*영(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 ****호	
26	-	노룡동	35-5	답	1,632.0	-	노룡동	35-5	답	1,632.0	0.0	0.0	김*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 ***동 ****호	
27	-	노룡동	35-6	답	2,009.0	-	노룡동	35-6	답	1,976.7	0.0	32.3	윤*호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번길 *_*	
28	-	노룡동	35-7	답	1,978.0	-	노룡동	35-7	답	1,978.0	0.0	0.0	강*영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	
29	-	노룡동	36	답	670.0	-	노룡동	36	답	670.0	0.0	0.0	박*열	경상남도 사천시 대례길 **-*	
30	-	노룡동	36-1	답	1,334.0	-	노룡동	36-1	답	1,334.0	0.0	0.0	김*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 ***동 ****호	

				ı	1 1				ı			ı	ı	ı ı
31	-	노룡동	36-2	답	1,992.0	-	노룡동	36-2	답	1,992.0	0.0	0.0	정*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동 ****호
32	-	노룡동	37	답	340.0	-	노룡동	37	답	340.0	0.0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3	-	노룡동	37-1	답	1,641.0	-	노룡동	37-1	답	1,641.0	0.0	0.0	이*제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 ***동 ***호
34	-	노룡동	37-2	답	1,007.0	-	노룡동	37-2	답	1,007.0	0.0	0.0	이*옥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동 ***호
35	-	노룡동	37-3	납	974.0	-	노룡동	37-3	답	974.0	0.0	0.0	안*정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6	-	노룡동	37-4	답	1,141.0	-	노룡동	37-4	답	1,141.0	0.0	0.0	김******* 중	***
37	-	노룡동	37-5	답	858.0	-	노룡동	37-5	답	858.0	0.0	0.0	이*현	경상남도 사천시 노대길 ***
38	-	노룡동	38	답	1,683.0	-	노룡동	38	답	1,683.0	0.0	0.0	박*순	경상남도 사천시 나무전길 *** ****호
39	-	노룡동	38-1	답	324.0	-	노룡동	38-1	답	324.0	0.0	0.0	박*순	경상남도 사천시 나무전길 *** ****호
40	-	노룡동	38-2	답	1,682.0	-	노룡동	38-2	답	1,682.0	0.0	0.0	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_** ***동 ****호
41	_	노룡동	38-3	도로	312.0	_	노룡동	38-3	도로	351.5	39.5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42	-	노룡동	38-4	답	1,176.0	-	노룡동	38-4	답	1,176.0	0.0	0.0	조*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 ***동 ****호
43	-	노룡동	38-5	답	824.0	-	노룡동	38-5	답	824.0	0.0	0.0	신*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44	-	노룡동	38-6	답	1,970.0	-	노룡동	38-6	답	1,970.0	0.0	0.0	송*옥	사천군 용현면 덕곡리 ***
45	-	노룡동	39	도로	3,777.0	-	노룡동	39	도로	4,149.3	372.3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46	-	노룡동	39-2	도로	25.0	_	-	_	_	말소	0.0	25.0	국(국토교 통부)	
47	-	노룡동	40	답	224.0	-	노룡동	40	답	224.0	0.0	0.0	<u> </u>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48	-	노룡동	40-1	답	404.0	-	노룡동	40-1	답	417.2	13.2	0.0	안*애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49	-	노룡동	40-2	답	942.0	-	노룡동	40-2	답	942.0	0.0	0.0	김*배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50	-	노룡동	40-3	답	1,078.0	-	노룡동	40-3	답	1,078.0	0.0	0.0	김*배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51	-	노룡동	40-4	답	1,475.0	-	노룡동	40-4	답	1,475.0	0.0	0.0	정*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번길 * ₋ *
52	-	노룡동	40-5	답	533.0	-	노룡동	40-5	답	533.0	0.0	0.0	정*용	경상남도 창원시 의장구 사림로***번길 *-*
53	-	노룡동	40-6	납	1,055.0	-	노용동	40-6	납	1,055.0	0.0	0.0	김*열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길 **
54	-	노룡동	40-7	답	943.0	-	노룡동	40-7	답	943.0	0.0	0.0	김*열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길 **
55	-	노룡동	40-8	답	859.0	-	노룡동	40-8	답	859.0	0.0	0.0	강*안	경상남도 사천시 중존*길 **-*
56	-	노룡동	40-9	답	1,005.0	-	노룡동	40-9	답	1,005.0	0.0	0.0	강*안	경상남도 사천시 중촌*길 **-*
57	-	노룡동	40-10	답	163.0	-	노룡동	40-10	답	163.0	0.0	0.0	강*안	경상남도 사천시 중존*길 **-*
58	-	노룡동	40-15	도로	109.0	-	노룡동	40-15	도로	49.8	0.0	59.2	국(국토교 통부)	
59	-	노룡동	41	답	1,979.0	-	노룡동	41	답	2,002.0	23.0	0.0	박*춘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60	-	노룡동	41-1	답	2,018.0	-	노룡동	41-1	답	1,995.0	0.0	23.0	박*춘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61	-	노룡동	41-2	답	2,020.0	-	노룡동	41-2	답	2,020.0	0.0	0.0	강*주	경상남도 사천시 심포*길 *
62	-	노룡동	41-3	답	1,249.0	-	노룡동	41-3	답	1,249.0	0.0	0.0	서*용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안길 **
63	-	노룡동	41-4	답	734.0	-	노룡동	41-4	답	734.0	0.0	0.0	서*도	경상남도 사천시 각산로 ** 나동 ***호
64	-	노룡동	41-5	답	1,971.0	-	노룡동	41-5	답	1,971.0	0.0	0.0	김*곤	경상남도 사천시 송천길 **

65	-	노룡동	41-6	답	1,543.0	-	노룡동	41-6	답	1,521.9	0.0	21.1	우*순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덕의길 **	
66	-	노룡동	41-7	답	501.0	-	노룡동	41-7	답	488.7	0.0	12.3	김*곤	경상남도 사천시 송천길 **	
67	-	노룡동	41-8	답	1,604.0	-	노룡동	41-8	답	1,604.0	0.0	0.0	박*이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68	-	노룡동	41-9	답	384.0	-	노룡동	41-9	답	384.0	0.0	0.0	박*이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69	-	노룡동	41-10	답	1,734.0	-	노룡동	41-10	답	1,734.0	0.0	0.0	정*용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70	-	노룡동	42	답	1,089.0	-	노룡동	42	답	1,089.0	0.0	0.0	정*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71	-	노룡동	42-1	답	1,027.0	-	노룡동	42-1	답	1,027.0	0.0	0.0	김*희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 ***동 ****호	
72	-	노룡동	42-2	답	770.0	-	노룡동	42-2	답	770.0	0.0	0.0	김*희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 ***동 ****호	
73	-	노룡동	42-3	답	735.0	-	노룡동	42-3	답	735.0	0.0	0.0	조*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 ***동 ***호	
74	-	노룡동	43	답	911.0	-	노룡동	43	답	941.1	30.1	0.0	정*선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용산*길 **_**	
75	-	노룡동	43-1	대	340.0	-	노룡동	43-1	대	340.0	0.0	0.0	김*순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 ***동 ***호	
76	-	노룡동	43-2	답	1,244.0	-	노룡동	43-2	답	1,244.0	0.0	0.0	대표 미지정(2명)		
77	-	노룡동	43-3	답	793.0	-	노룡동	43-3	답	762.9	0.0	30.1	정*선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용산*길 **_**	
78	-	노룡동	43-4	답	1,987.0	-	노룡동	43-4	납	1,987.0	0.0	0.0	김혁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 ***호	
79	-	노룡동	43-5	답	2,009.0	-	노룡동	43-5	납	2,009.0	0.0	0.0	전*자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 ***동 ***호	
80	-	노룡동	43-6	답	2,016.0	-	노룡동	43-6	답	2,016.0	0.0	0.0	신*균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동 ****호	

l 1		1 1		i	l I		I		I	. I		I	I	ı ı	1
81	-	노룡동	43-7	답	2,010.0	-	노룡동	43-7	답	2,010.0	0.0	0.0	유*병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 **-**	
82	-	노룡동	43-8	답	2,010.0	-	노룡동	43-8	답	2,010.0	0.0	0.0	안*정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83	-	노룡동	43-11	답	1,981.0	-	노룡동	43-11	답	1,981.0	0.0	0.0	김*길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길 *-* ***호	
84	-	노룡동	43-12	답	1,968.0	-	노룡동	43-12	답	2,029.4	61.4	0.0	박*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동문*길 * ***호	
85	-	노룡동	43-13	답	1,888.0	-	노룡동	43-13	답	1,879.0	0.0	9.0	이*룡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86	-	노룡동	43-14	답	1,397.0	-	노룡동	43-14	답	1,561.7	164.7	0.0	이*룡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87	-	노룡동	43-15	창고용 지	1,304.0	-	노룡동	43-15	창고용 지	1,148.3	0.0	155.7	이*룡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88	-	노룡동	43-16	도로	170.0	-	노룡동	43-16	도로	179.0	9.0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89	-	노룡동	43-17	답	1,017.0	-	노룡동	43-17	답	1,017.0	0.0	0.0	백*태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하동안길 **-* ***호	
90	-	노룡동	43-18	답	694.0	-	노룡동	43-18	답	694.0	0.0	0.0	김*진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번길 ** *동 ***호	
91	-	노룡동	43-21	도로	60.0	-	-	-	-	말소	0.0	60.0	국(국토교 통부)		
92	-	노룡동	44	답	493.0	-	노룡동	44	답	493.0	0.0	0.0	송*옥	사천군 용현면 덕곡리 ***	
93	-	노룡동	44-1	답	619.0	-	노룡동	44-1	답	619.0	0.0	0.0	김*정	경상남도 사천시 서남평길 ***	
94	-	노룡동	44-2	답	416.0	-	노룡동	44-2	답	416.0	0.0	0.0	김*정	경상남도 사천시 서남평길 ***	
95	-	노룡동	44-3	답	81.0	-	노룡동	44-3	답	81.0	0.0	0.0	김*정	경상남도 사천시 서남평길 ***	
96	-	노룡동	44-4	답	280.0	-	노룡동	44-4	답	280.0	0.0	0.0	박*례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97	-	노룡동	44-5	수도용 지	158.0	-	노룡동	44-5	수도용 지	133.5	0.0	24.5	사천시(외 1명)		
98	-	노룡동	45	답	716.0	-	노룡동	45	답	716.0	0.0	0.0	박*례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99	-	노룡동	45-1	답	826.0	-	노룡동	45-1	답	826.0	0.0	0.0	이*복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	

100	-	노룡동	45-2	답	730.0	-	노룡동	45-2	답	730.0	0.0	0.0	송*옥	사천군 용현면 덕곡리 ***	
101	-	노룡동	45-3	답	497.0	-	노룡동	45-3	답	497.0	0.0	0.0	송*갑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덕길 **-*	
102	-	노룡동	45-4	답	579.0	-	노룡동	45-4	답	579.0	0.0	0.0	강*진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길 ** ****호	
103	-	노룡동	45-5	수도용 지	90.0	-	노룡동	45-5	수도용	89.0	0.0	1.0	국(환경부)		
104	-	노룡동	46	답	1,969.0	-	노룡동	46	답	1,969.0	0.0	0.0	김*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 ***동 ****호	
105	-	노룡동	46-1	답	1,990.0	-	노룡동	46-1	답	1,990.0	0.0	0.0	대표 미지정(2명)		
106	-	노룡동	46-2	답	1,844.0	-	노룡동	46-2	답	1,844.0	0.0	0.0	김*곤	경상남도 사천시 송천길 **	
107	-	노룡동	46-3	답	999.0	-	노룡동	46-3	답	999.0	0.0	0.0	이*수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 ***동 ***호	
108	-	노룡동	46-4	답	199.0	-	노룡동	46-4	답	199.0	0.0	0.0	이*수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 ***동 ***호	
109	-	노룡동	46-5	답	214.0	-	노룡동	46-5	답	214.0	0.0	0.0	이*수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 ***동 ***호	
110	-	노룡동	46-6	수도용 지	376.0	-	노룡동	46-6	수도용 지	376.0	0.0	0.0	사천시(외 1명)		
111	-	노룡동	46-8	수도용 지	58.0	-	노룡동	46-8	수도용	58.5	0.5	0.0	국(국토교 통부)		
112	-	노룡동	50	답	1,784.0	-	노룡동	50	답	1,784.0	0.0	0.0	박*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덕길 **-*	
113	-	노룡동	50-1	답	2,014.0	-	노룡동	50-1	답	2,014.0	0.0	0.0	대표 미지정(2명)		
114	-	노룡동	50-2	답	892.0	-	노룡동	50-2	답	892.0	0.0	0.0	이*복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	
115	-	노룡동	50-3	답	1,092.0	-	노룡동	50-3	답	1,092.0	0.0	0.0	박*문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동 ***	
116	-	노룡동	50-4	수도용 지	226.0	-	노룡동	50-4	수도용 지	235.6	9.6	0.0	국(환경부)		
117	-	노룡동	51	대	660.0	-	노룡동	51	대	660.0	0.0	0.0	정*용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118	-	노룡동	51-4	답	46.0	-	노룡동	51-4	답	52.0	6.0	0.0	사천시		
119	-	노룡동	51-5	답	2.0	-	-	-	-	말소	0.0	2.0	사천시		
120	-	노룡동	51-7	답	3,121.0	-	노룡동	51-7	답	3,121.0	0.0	0.0	정*용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121	-	노룡동	51-8	답	19.0	-	노룡동	51-8	답	19.0	0.0	0.0	정*용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122	-	노룡동	55-3	답	93.0	-	노룡동	55-3	답	101.0	8.0	0.0	강*문	사천군 정동면 고읍리 ***
123	-	노룡동	55-4	도로	8.0	-	-	-	-	말소	0.0	8.0	강*문	사천군 정동면 고읍리 ***
124	-	노룡동	56	답	283.0	-	노룡동	56	답	283.0	0.0	0.0	김*희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 ***동 ****호
125	-	노룡동	56-1	답	226.0	-	노룡동	56-1	답	226.0	0.0	0.0	조*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부곡*길 *
126	-	노룡동	56-2	답	1,483.0	-	노룡동	56-2	답	1,483.0	0.0	0.0	허*화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동 ****호
127	-	노룡동	56-3	답	677.0	-	노룡동	56-3	답	677.0	0.0	0.0	오*심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로 ** ***동 ***호
128	-	노룡동	56-4	답	2,029.0	-	노룡동	56-4	답	2,029.0	0.0	0.0	허*화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동 ****호
129	-	노룡동	56-5	답	1,998.0	-	노룡동	56-5	답	1,998.0	0.0	0.0	대표 미지정(2명)	
130	-	노룡동	56-6	답	1,385.0	-	노룡동	56-6	답	1,385.0	0.0	0.0	이*아	경상남도 사천시 배천길 **
131	-	노룡동	56-7	답	1,261.0	-	노룡동	56-7	답	1,261.0	0.0	0.0	박*원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안길 ***
132	-	노룡동	56-8	수도용 지	306.0	-	노룡동	56-8	수도용 지	306.0	0.0	0.0	사천시(외 1명)	
133	-	노룡동	56-9	수도용 지	194.0	-	노룡동	56-9	수도용 지	210.0	16.0	0.0	국(환경부)	
134	-	노룡동	57	답	1,059.0	-	노룡동	57	답	1,059.0	0.0	0.0	박*원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안길 ***
135	-	노룡동	57-1	답	871.0	-	노룡동	57-1	답	871.0	0.0	0.0	박*원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안길 ***
136	-	노룡동	57-2	답	762.0	-	노룡동	57-2	답	762.0	0.0	0.0	김*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 ***동 ***호
137	-	노룡동	60	묘지	506.0	-	노룡동	60	묘지	506.0	0.0	0.0	문*철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 *** *동 ***호

138	-	노룡동	61	도로	3,630.0	-	노룡동	61	도로	4,511.4	881.4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139	-	노룡동	61-1	도로	12.0	-	-	-	-	말소	0.0	12.0	국(국토교 통부)		
140	-	노룡동	62	대	1,124.0	-	노룡동	62	대	1,124.0	0.0	0.0	김*숙(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 ***동 ***호	
141	-	노룡동	62-2	답	1,081.0	-	노룡동	62-2	답	1,081.0	0.0	0.0	박*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 ***동 ***호	
142	-	노룡동	62-3	답	1,386.0	-	노룡동	62-3	답	1,386.0	0.0	0.0	박*포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 ***동 ****호	
143	-	노룡동	62-4	답	618.0	-	노룡동	62-4	답	618.0	0.0	0.0	박*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 ***동 ***호	
144	-	노룡동	62-5	답	307.0	-	노룡동	62-5	답	307.0	0.0	0.0	박*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 *동 ***호	
145	-	노룡동	62-6	답	1,704.0	-	노룡동	62-6	답	1,704.0	0.0	0.0	배*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길 *** ***동 ****호	
146	-	노룡동	62-7	대	1,601.0	-	노룡동	62-7	대	1,601.0	0.0	0.0	대표 미지정(2명)		
147	-	노룡동	62-8	답	371.0	-	노룡동	62-8	답	371.0	0.0	0.0	박*자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로 ** ***동 ***호	
148	-	노룡동	62-9	도로	32.0	-	-	-	-	말소	0.0	32.0	사천시		
149	-	노룡동	62-10	답	18.0	-	노룡동	62-10	답	18.0	0.0	0.0	김*숙(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 ***동 ***호	
150	-	노룡동	63	답	1,812.0	-	노룡동	63	답	1,812.0	0.0	0.0	박*자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로 ** ***동 ***호	
151	-	노룡동	63-1	답	888.0	-	노룡동	63-1	답	888.0	0.0	0.0	이*룡(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152	-	노룡동	63-2	답	871.0	-	노룡동	63-2	답	922.2	51.2	0.0	이*룡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153	-	노룡동	63-3	답	1,057.0	-	노룡동	63-3	답	1,057.0	0.0	0.0	유*덕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 ***동 ***호	

		I I		I	1 1		l I		I			ı	1 1	ı ı	1
154	-	노룡동	63-4	답	2,041.0	-	노룡동	63-4	답	2,041.0	0.0	0.0	정*녀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로 **-*	
155	-	노룡동	63-5	답	1,971.0	-	노룡동	63-5	답	1,971.0	0.0	0.0	문*렬	***	
156	-	노룡동	63-6	답	1,985.0	-	노룡동	63-6	답	1,985.0	0.0	0.0	문*상	경상남도 사천시 노례길 **	
157	-	노룡동	63-7	창고용 지	1,696.0	-	노룡동	63-7	창고용 지	1,696.0	0.0	0.0	박*우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	
158	-	노룡동	63-8	수도용 지	446.0	-	노룡동	63-8	수도용 지	446.0	0.0	0.0	사천시(외 1명)		
159	-	노룡동	63-10	답	623.0	-	노룡동	63-10	답	623.0	0.0	0.0	이*룡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160	-	노룡동	63-12	수도용 지	265.0	-	노룡동	63-12	수도용 지	272.7	7.7	0.0	국(환경부)		
161	-	노룡동	63-16	도로	19.0	-	노룡동	63-16	도로	10.7	0.0	8.3	사천시		
162	-	노룡동	65-3	도로	2,578.0	-	노룡동	65-3	도로	2,090.9	0.0	487.1	국(농림축 산식품부)		
163	-	노룡동	66-2	도로	417.0	-	노룡동	66-2	도로	485.8	68.8	0.0	국(국토교 통부)		
164	-	노룡동	67-2	도로	1,137.0	-	노룡동	67-2	도로	1,154.1	17.1	0.0	국(국토교 통부)		
165	-	노룡동	67-3	대	136.0	-	노룡동	67-3	대	136.0	0.0	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66	-	노룡동	67-9	도로	168.0	-	노룡동	67-9	도로	145.7	0.0	22.3	사천시		
167	-	노룡동	68	답	1,724.0	-	노룡동	68	답	1,724.0	0.0	0.0	박*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덕길 **	
168	-	노룡동	68-4	답	1,863.0	-	노룡동	68-4	답	1,863.0	0.0	0.0	이*옥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번길 ** ***동 ****호	
169	-	노룡동	68-5	답	1,430.0	-	노룡동	68-5	답	1,430.0	0.0	0.0	배*식(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호	
170	-	노룡동	68-6	답	653.0	-	노룡동	68-6	답	653.0	0.0	0.0	이*옥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번길 ** ***동 ****호	
171	-	노룡동	68-7	도로	610.0	-	노룡동	68-7	도로	851.1	241.1	0.0	사천시		
172	-	노룡동	128-1	종교용 지	251.0	-	노룡동	128-1	종교 용 지	251.0	0.0	0.0	노***회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	
173	-	노룡동	148-1	대	113.0	-	노룡동	148-1	대	97.8	0.0	15.2	국(기획재 정부)		
174	-	노룡동	156-8	답	7.0	-	-	-	-	말소	0.0	7.0	국(기획재 정부)		

175		노룡동	150.2	대	42.0		노룡동	150.2	ги	42.0	0.0		김*순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 ***동	
175	-	工会会	159-3	ᄓ	42.0	-	工会会	159-3	대	42.0	0.0	0.0	台 [*] 正 	당시도 ^^^ ^^·ㅎ	
176	-	노룡동	159-8	도로	33.0	-	노룡동	159-8	도로	25.9	0.0	7.1	국(국토교 통부)		
177	-	노룡동	160-7	답	6.0	-	-	-	-	말소	0.0	6.0	국(기획재 정부)		
178	-	노룡동	325	답	1,755.0	-	노룡동	325	답	1,755.0	0.0	0.0	임*순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길 ** ***동 ****호	
179	-	노룡동	325-1	답	290.0	-	노룡동	325-1	답	290.0	0.0	0.0	김*태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180	-	노룡동	325-2	답	1,335.0	-	노룡동	325-2	답	1,318.7	0.0	16.3	장*자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181	-	노룡동	325-3	답	1,851.0	-	노룡동	325-3	답	1,867.3	16.3	0.0	장*자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182	-	노룡동	325-5	도로	622.0	-	노룡동	325-5	도로	717.3	95.3	0.0	사천시		
183	-	노룡동	327	맙	1,215.0	-	노룡동	327	맙	1,215.0	0.0	0.0	김*덕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번길 ** ***동 ****호	
184	-	노룡동	327-1	답	660.0	-	노룡동	327-1	답	660.0	0.0	0.0	김*덕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번길 ** ***동 ****호	
185	-	노룡동	327-2	답	1,072.0	-	노룡동	327-2	답	1,072.0	0.0	0.0	곽*혜(외 6명)	경상남도 사천시 상강청길 ** ***동 ****호	
186	-	노룡동	327-3	답	823.0	-	노룡동	327-3	답	823.0	0.0	0.0	위*선	경상남도 사천시 지산길 **	
187	-	노룡동	328	납	711.0	-	노룡동	328	납	711.0	0.0	0.0	최*선	경상남도 사천시 남평중길 **	
188	-	노룡동	328-1	답	1,661.0	-	노룡동	328-1	답	1,661.0	0.0	0.0	이*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번길 *** ***동 ***호	
189	-	노룡동	328-2	답	431.0	-	노룡동	328-2	답	431.0	0.0	0.0	배*식(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호	
190	-	노룡동	328-3	답	623.0	-	노룡동	328-3	답	623.0	0.0	0.0	이*옥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번길 ** ***동 ****호	

191	-	노룡동	328-4	수도용 지	400.0	-	노룡동	328-4	수도용 지	400.0	0.0	0.0	사천시(외 1명)		
192	-	노룡동	328-5	수도용 지	257.0	-	노룡동	328-5	수도용 지	158.4	0.0	98.6	국(환경부)		
193	-	노룡동	328-6	답	808.0	-	노룡동	328-6	답	808.0	0.0	0.0	최*선	경상남도 사천시 남평중길 **	
								329	구거	1,803.6					
								329-1	구거	1,137.8					
								329-2	구거	357.6					
	194 - <u>-</u>							329-3	구거	90.2			7,631		
194		노룡동	329	구거	4,549.0	-	노룡동	329-4	구거	24.5	0.0	910.6	국(농림축 산식품부)		
								329-5	구거	57.1					
								329-6	구거	111.0					
								329-7	구거	56.6					
195	-	노룡동	330	답	2,375.0	-	노룡동	330	답	2,375.0	0.0	0.0	박*동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	
196	-	노룡동	330-3	답	963.0	-	노룡동	330-3	답	928.0	0.0	35.0	김*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길 *-** ***호	
197	-	노룡동	330-4	답	1,000.0	-	노룡동	330-4	답	1,035.0	35.0	0.0	김*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길 *-** ***호	
198	-	노룡동	330-5	답	883.0	-	노룡동	330-5	답	903.1	20.1	0.0	이*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 ***동 ***호	
199	-	노룡동	330-6	답	850.0	-	노룡동	330-6	답	829.9	0.0	20.1	이*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 ***동 ***호	
200	-	노룡동	330-7	수도용 지	253.0	-	노룡동	330-7	수도용 지	347.0	94.0	0.0	국(환경부)		
201	-	노룡동	331	답	362.0	-	노룡동	331	답	362.0	0.0	0.0	최*선	경상남도 사천시 남평중길 **	
202	-	노룡동	331-1	답	441.0	-	노룡동	331-1	답	441.0	0.0	0.0	박*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동 ***호	
203	-	노룡동	331-2	답	781.0	-	노룡동	331-2	답	781.0	0.0	0.0	박*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동 ***호	
204	-	노룡동	331-3	답	1,010.0	-	노룡동	331-3	답	1,010.0	0.0	0.0	김*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1 1		I	l I	l	l I		ı	1	I			I	1	 	1
205	-	노룡동	331-4	답	1,008.0	-	노룡동	331-4	답	1,008.0	0.0	0.0	문*숙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하동안길 **-* ***호	
206	-	노룡동	331-5	수도용 지	403.0	-	노룡동	331-5	수도용 지	403.0	0.0	0.0	사천시(외 1명)		
207	-	노룡동	333	답	978.0	-	노룡동	333	답	978.0	0.0	0.0	탁*세	경상남도 사천시 지산길 ***	
208	-	노룡동	333-1	답	2,006.0	-	노룡동	333-1	답	2,006.0	0.0	0.0	정형운(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 ***동 ****호	
209	-	노룡동	333-4	답	929.0	-	노룡동	333-4	답	934.8	5.8	0.0	대표 미지정(2명)		
210	-	노룡동	333-5	답	819.0	-	노룡동	333-5	답	813.2	0.0	5.8	대표 미지정(2명)		
211	-	노룡동	333-6	답	890.0	-	노룡동	333-6	답	890.0	0.0	0.0	대표 미지정(2명)		
212	-	노룡동	333-7 333-8	답 답	46.0 45.0	-	노룡동	333-7	답	91.0	0.0	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13	-	노룡동	334	도로	331.0	-	노룡동	334	도로	315.5	0.0	15.5	국(농림축 산식품부)		
214	-	노룡동	334-1	답	1,900.0	-	노룡동	334-1	답	1,900.0	0.0	0.0	박*원(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길 * 가동 ***호	
215	-	노룡동	334-2	답	1,997.0	-	노룡동	334-2	답	1,997.0	0.0	0.0	서*선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16	-	노룡동	334-3	답	1,953.0	-	노룡동	334-3	답	1,953.0	0.0	0.0	김*재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17	-	노룡동	335	도로	1,906.0	-	노룡동	335	도로	2,404.2	498.2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18	-	노룡동	336	답	1,973.0	-	노룡동	336	답	1,973.0	0.0	0.0	문*권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19	-	노룡동	336-1	답	1,958.0	-	노룡동	336-1	답	1,958.0	0.0	0.0	김*성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20	-	노룡동	336-2	답	1,989.0	-	노룡동	336-2	답	1,989.0	0.0	0.0	김*성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21	-	노룡동	337	답	1,016.0	-	노룡동	337	답	1,016.0	0.0	0.0	김*순	경상남도 사천시 새섬바위길 *	
222	-	노룡동	337-1	답	969.0	-	노룡동	337-1	답	969.0	0.0	0.0	이*근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함박길 **-*	
223	-	노룡동	337-2	답	575.0	-	노룡동	337-2	답	575.0	0.0	0.0	이*근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함박길 **-*	
224	-	노룡동	337-3	답	975.0	-	노룡동	337-3	답	986.7	11.7	0.0	김*순	경상남도 사천시 새섬바위길 *	

1 1		I	I	I	l I		I	I	I			I	l I	I	1
225	-	노룡동	337-4	답	328.0	-	노룡동	337-4	답	328.0	0.0	0.0	이*근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함박길 **-*	
226	-	노룡동	338	답	1,791.0	-	노룡동	338	답	1,773.5	0.0	17.5	정*문	경상남도 사천시 임내길 ***	
227	-	노룡동	338-1	답	718.0	-	노룡동	338-1	답	718.0	0.0	0.0	이*연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228	-	노룡동	338-2	답	1,272.0	-	노룡동	338-2	답	1,272.0	0.0	0.0	이*연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229	-	노룡동	338-3	답	1,004.0	-	노룡동	338-3	답	997.4	0.0	6.6	정*성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230	-	노룡동	338-4	답	1,014.0	-	노룡동	338-4	답	1,009.0	0.0	5.0	강*흥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	
231	-	노룡동	338-5	답	798.0	-	노룡동	338-5	답	798.0	0.0	0.0	박*임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번길 ** ***동 ***호	
232	-	노룡동	338-7	수도용	398.0	-	노룡동	338-7	수도용	398.0	0.0	0.0	사천시(외 1명)		
233	-	노룡동	338-8	수도용 지	249.0	-	노룡동	338-8	수도용 지	224.2	0.0	24.8	국(환경부)		
234	-	노룡동	381-2	도로	102.0	-	노룡동	381-2	도로	102.0	0.0	0.0	이*호	***	
235	-	노룡동	382	대	350.0	-	노룡동	382	대	350.0	0.0	0.0	주*형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	
236	-	노룡동	382-3	답	786.0	-	노룡동	382-3	답	786.0	0.0	0.0	성*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번길 **	
237	-	노룡동	382-4	답	998.0	-	노룡동	382-4	답	1,035.3	37.3	0.0	강*흥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	
238	-	노룡동	382-5	답	708.0	-	노룡동	382-5	답	714.6	6.6	0.0	정*성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239	-	노룡동	382-6	답	282.0	-	노룡동	382-6	답	282.0	0.0	0.0	정*성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240	-	노룡동	382-10	답	3,055.0	-	노룡동	382-10	답	3,055.0	0.0	0.0	주*형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	

														 경사나드 사처시	
241	-	노룡동	382-11	답	16.0	-	노룡동	382-11	답	16.0	0.0	0.0	주*형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	
242	-	노룡동	383-2	도로	347.0	-	노룡동	383-2	도로	347.0	0.0	0.0	박*철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43	-	노룡동	384-2	도로	264.0	-	노룡동	384-2	도로	264.0	0.0	0.0	문*홍	***	
244	-	노룡동	385-2	도로	83.0	-	노룡동	385-2	도로	83.0	0.0	0.0	강*철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 ***동 ****호	
								386	구거	1,151.3					
245	-	노룡동	386	구거	1,218.0	-	노룡동	386-1	구거	102.0	169.3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_	
								386-2	구거	134.0					
246	-	노룡동	387	답	1,093.0	-	노룡동	387	답	1,093.0	0.0	0.0	오*민	경상남도 사천시 등대길 **	
247	-	노룡동	387-1	답	815.0	-	노룡동	387-1	답	815.0	0.0	0.0	오*현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정촌로 ***-**	
248	-	노룡동	387-2	답	1,008.0	-	노룡동	387-2	답	1,008.0	0.0	0.0	오*현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정촌로 ***-**	
249	-	노룡동	387-3	답	1,006.0	-	노룡동	387-3	답	981.4	0.0	24.6	강*원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호	
250	-	노룡동	387-4	답	991.0	-	노룡동	387-4	답	1,015.6	24.6	0.0	강*원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호	
251	-	노룡동	387-5	납	934.0	-	노룡동	387-5	답	934.0	0.0	0.0	김*언	경상남도 사천시 상강청길 ** ***동 ****호	
252	-	노룡동	387-6	도로	310.0	-	노룡동	387-6	도로	310.0	0.0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53	-	노룡동	387-7	수도용	374.0	-	노룡동	387-7	수도용	374.0	0.0	0.0	사천시(외 1명)		
254	-	노룡동	387-8	수도용 지	268.0	-	노룡동	387-8	수도용 지	321.9	53.9	0.0	국(국토교 통부)		
255	-	노룡동	389	땁	860.0	-	노룡동	389	답	860.0	0.0	0.0	임*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 ***동 ***호	
256	-	노룡동	389-1	답	2,374.0	-	노룡동	389-1	답	2,374.0	0.0	0.0	황*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길 **-*	
257	-	노룡동	389-2	답	816.0	-	노룡동	389-2	답	816.0	0.0	0.0	오*민	경상남도 사천시 등대길 **	

															1
258	-	노룡동	392	답	518.0	-	노룡동	392	답	518.0	0.0	0.0	강*갑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	
259	-	노룡동	392-1	답	631.0	-	노룡동	392-1	답	631.0	0.0	0.0	대표 미지정(2명)		
260	-	노룡동	392-2	답	869.0	-	노룡동	392-2	답	869.0	0.0	0.0	강*갑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	
261	-	노룡동	392-3	답	1,644.0	-	노룡동	392-3	답	1,644.0	0.0	0.0	강*갑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	
262	-	노 8 8	393	답	1,897.0	-	8 8	393	답	1,897.0	0.0	0.0	박*갑(외 2명)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 ***동 ****호	
263	-	노룡동	393-1	답	1,912.0	-	노룡동	393-1	답	1,912.0	0.0	0.0	안*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264	-	노룡동	394	답	646.0	-	노룡동	394	답	646.0	0.0	0.0	최*현(외 1명)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번길 ** ***호	
265	-	노룡동	394-1	답	233.0	-	노룡동	394-1	답	187.0	0.0	46.0	최*현(외 1명)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번길 ** ***호	
266	-	노룡동	394-2	답	587.0	-	노룡동	394-2	답	587.0	0.0	0.0	강*원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호	
267	-	노룡동	395	구거	669.0	-	노룡동	395	구거	583.7	0.0	85.3	국(농림축 산식품부)		
268	-	노룡동	396	도로	604.0	-	노룡동	396	도로	616.2	12.2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69	-	노룡동	397	답	681.0	-	노룡동	397	답	681.0	0.0	0.0	윤*재(외 1명)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가촌길 **_**	
270	-	노룡동	397-1	답	1,469.0	-	노룡동	397-1	답	1,336.7	0.0	132.3	이*은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271	-	노룡동	397-2	답	1,448.0	-	노룡동	397-2	답	1,448.0	0.0	0.0	윤*재(외 1명)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가촌길 **_**	
272	-	노룡동	397-3	답	1,633.0	-	노룡동	397-3	답	1,633.0	0.0	0.0	안*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	
273	-	노룡동	397-4	수도용 지	564.0	-	노룡동	397-4	수도용 지	564.0	0.0	0.0	사천시(외 1명)		
274	-	노룡동	397-5	수도용 지	320.0	-	노룡동	397-5	수도용 지	296.6	0.0	23.4	국(환경부)		
275	-	노룡동	398	과수원	1,589.0	-	노룡동	398	과수원	1,589.0	0.0	0.0	백*선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276	-	노룡동	398-2	답	1,252.0	-	노룡동	398-2	답	1,252.0	0.0	0.0	우*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동 ****호	
277	-	노룡동	398-3	답	775.0	-	노룡동	398-3	답	775.0	0.0	0.0	우*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동 ****호	
278	-	노룡동	398-4	답	379.0	-	노룡동	398-4	답	379.0	0.0	0.0	임*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길 **	
279	-	노룡동	398-5	답	403.0	-	노룡동	398-5	답	403.0	0.0	0.0	임*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길 **	
280	-	노룡동	398-8	답	242.0	-	노룡동	398-8	답	242.0	0.0	0.0	임*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길 **	
281	-	노룡동	398-13	도로	18.0	-	노룡동	398-13	도로	59.8	41.8	0.0	사천시		
282	-	노룡동	398-14	도로	9.0	-	노룡동	398-14	도로	14.1	5.1	0.0	사천시		
283	-	노룡동	399	구거	396.0	-	노룡동	399	구거	417.5	21.5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84	-	노룡동	400-1	도로	879.0	-	노룡동	400-1	도로	1,108.4	229.4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85	-	노룡동	400-3	도로	8.0	-	-	1	-	말소	0.0	8.0	국(국토교 통부)		
286	-	노룡동	400-4	도로	5.0	-	-	ı	-	말소	0.0	5.0	국(국토교 통부)		
287	-	노룡동	401-2	도로	63.0	-	노룡동	401-2	도로	63.0	0.0	0.0	곽*석	신벽동 ***-*	
288	-	노룡동	402	답	106.0	-	노룡동	402	답	97.8	0.0	8.2	국(기획재 정부)		
289	-	노룡동	402-1	답	1,071.0	-	노룡동	402-1	답	1,071.0	0.0	0.0	이*임(외 2명)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길 **	
290	-	노룡동	402-2	답	556.0	-	노룡동	402-2	답	556.0	0.0	0.0	김*권	진주시 하대동 ***-* 도동대림아파트 *-***	
291	-	노룡동	402-3	답	1,844.0	-	노룡동	402-3	답	1,844.0	0.0	0.0	대표 미지정(2명)		
292	-	노룡동	402-8	도로	1.0	-	-	-	-	말소	0.0	1.0	국(국토교 통부)		
293	-	노룡동	404	답	542.0	-	노룡동	404	답	542.0	0.0	0.0	국(기획재 정부)		
294	-	노룡동	404-1	답	961.0	-	노룡동	404-1	답	961.0	0.0	0.0	강*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295	-	노룡동	404-2	답	1,237.0	-	노룡동	404-2	답	1,237.0	0.0	0.0	김*권	진주시 하대동 ***-* 도동대림아파트 *-***	

296	-	노룡동	404-3	답	954.0	-	노룡동	404-3	답	954.0	0.0	0.0	구*영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	
297	_	노룡동	404-4	답	1,078.0	-	노룡동	404-4	답	1,078.0	0.0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298	_	노룡동	405-1	도로	152.0		노룡동	405-1	도로	132.7	0.0	19.3	국(국토교 통부)		
299	-	노룡동	406	도로	346.0	-	노룡동	406	도로	395.0	49.0	0.0	ST) 국(농림축 산식품부)		
300	-	노룡동	406-1	답	1,906.0	-	노룡동	406-1	답	1,906.0	0.0	0.0	<u></u> 박*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01	-	노룡동	406-2	답	2,001.0	-	노룡동	406-2	답	2,001.0	0.0	0.0	박*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02	-	노룡동	406-3	답	1,935.0	-	노룡동	406-3	답	1,935.0	0.0	0.0	박*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03	-	노룡동	406-4	답	2,020.0	-	노룡동	406-4	답	2,020.0	0.0	0.0	김*성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04	-	노룡동	406-5	답	287.0	-	노룡동	406-5	납	287.0	0.0	0.0	이*숙(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 ***호	
305	-	노룡동	406-6	답	1,684.0	-	노룡동	406-6	답	1,684.0	0.0	0.0	이*숙(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 ***호	
306	-	노룡동	406-7	도로	11.0	-	노룡동	406-7	도로	13.1	2.1	0.0	사천시		
307	-	노룡동	407	답	748.0	-	노룡동	407	답	748.0	0.0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08	-	노룡동	407-1	답	1,218.0	-	노룡동	407-1	답	1,218.0	0.0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09	-	노룡동	407-2	답	1,981.0	-	노룡동	407-2	답	1,981.0	0.0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10	-	노룡동	407-3	답	2,000.0	-	노룡동	407-3	답	2,000.0	0.0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11	-	노룡동	407-4	답	2,005.0	-	노룡동	407-4	답	2,005.0	0.0	0.0	김*태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동 ***호	
312	-	노룡동	407-5	답	1,963.0	-	노룡동	407-5	답	1,963.0	0.0	0.0	김*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 ***동 ****호	
313	-	노룡동	408	대	660.0	-	노룡동	408	대	660.0	0.0	0.0	문*상	경상남도 사천시 노례길 **	

1 1		ſ	l I		l I		I	1 1		l I		I I	l I	I	
314	-	노룡동	408-1	답	1,084.0	-	노룡동	408-1	답	1,084.0	0.0	0.0	문*상	경상남도 사천시 노례길 **	
315	-	노룡동	408-2	대	1,311.0	-	노룡동	408-2	대	1,311.0	0.0	0.0	문*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	
316	-	노룡동	408-3	대	318.0	-	노룡동	408-3	대	318.0	0.0	0.0	문*열	경상남도 사천시 임내길 ** ***동 ***호	
317	-	노룡동	408-10	도로	21.0	-	노룡동	408-10	도로	25.1	4.1	0.0	국(국토교 통부)		
318	-	노룡동	408-16	도로	5.0	-	노룡동	408-16	도로	2.6	0.0	2.4	사천시		
319	-	노룡동	408-18	답	214.0	-	노룡동	408-18	답	214.0	0.0	0.0	문*상	경상남도 사천시 노례길 **	
320	-	노룡동	408-21	도로	219.0	-	노룡동	408-21	도로	316.9	97.9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321	-	노룡동	409-2	도로	876.0	-	노룡동	409-2	도로	886.8	10.8	0.0	국(국토교 통부)		
322	-	노룡동	410-1	도로	86.0	-	노룡동	410-1	도로	118.0	32.0	0.0	국(국토교 통부)		
323	-	노룡동	411-1	도로	1,445.0	-	노룡동	411-1	도로	1,435.8	0.0	9.2	국(국토교 통부)		
324	-	노룡동	415-3	도로	120.0	-	노룡동	415-3	도로	107.3	0.0	12.7	사천시		
325	-	노룡동	416-3	도로	192.0	-	-	-	-	말소	0.0	192.0	이*구	경상남도 사천시 벽동길 **-**	
326	-	노룡동	416-4	도로	26.0	-	노룡동	416-4	도로	26.0	0.0	0.0	곽*형	경상남도 사천시 벽동길 **-**	
327	-	노룡동	418	답	1,312.0	-	노룡동	418	답	1,312.0	0.0	0.0	장*갑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번길 **	
328	-	노룡동	418-1	답	1,862.0	-	노룡동	418-1	답	1,862.0	0.0	0.0	김*부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29	-	노룡동	418-2	답	1,871.0	-	노룡동	418-2	답	1,871.0	0.0	0.0	박*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동문*길 * ***호	
330	-	노룡동	418-3	답	1,843.0	-	노룡동	418-3	답	1,843.0	0.0	0.0	이*근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번길 *	
331	-	노룡동	418-4	답	3,701.0	-	노룡동	418-4	답	3,701.0	0.0	0.0	안*정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32	-	노룡동	418-6	답	1,842.0	-	노룡동	418-6	답	1,842.0	0.0	0.0	강*자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33	-	노룡동	418-7	답	1,878.0	-	노룡동	418-7	답	1,878.0	0.0	0.0	김*원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34	-	노룡동	418-8	답	1,857.0	-	노룡동	418-8	답	1,857.0	0.0	0.0	김*원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35	-	노룡동	418-9	답	1,858.0	-	노룡동	418-9	답	1,858.0	0.0	0.0	임*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36	-	노룡동	418-11	답	1,838.0	-	노룡동	418-11	답	1,877.0	39.0	0.0	임*영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 ****호	
337	-	노룡동	418-13	도로	1,707.0	-	노룡동	418-13	도로	2,008.3	301.3	0.0	사천시		
338	-	노룡동	419	답	1,982.0	-	노룡동	419	답	1,982.0	0.0	0.0	이*숙(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 ***동 ***호	
339	-	노룡동	419-1	답	2,002.0	-	노룡동	419-1	답	2,002.0	0.0	0.0	문*권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40	-	노룡동	419-2	답	1,791.0	-	노룡동	419-2	답	1,791.0	0.0	0.0	이*룡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41	-	노룡동	419-3	답	207.0	-	노룡동	419-3	답	207.0	0.0	0.0	이*룡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42	-	노룡동	419-4	답	1,961.0	-	노룡동	419-4	답	1,961.0	0.0	0.0	김*관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 ****동 ****호	
343	-	노룡동	419-5	답	1,990.0	-	노룡동	419-5	답	1,990.0	0.0	0.0	박*철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44	-	노룡동	419-7	답	2,001.0	-	노룡동	419-7	답	2,001.0	0.0	0.0	신*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45	-	노룡동	419-8	답	1,941.0	-	노룡동	419-8	답	1,941.0	0.0	0.0	박*철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46	-	노룡동	419-9	답	1,016.0	-	노룡동	419-9	답	1,016.0	0.0	0.0	신*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47	-	노룡동	420	답	1,404.0	-	노룡동	420	답	1,404.0	0.0	0.0	소*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북*길 * ****호	
348	-	노룡동	420-1	답	742.0	-	노룡동	420-1	답	742.0	0.0	0.0	이*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 A동 ****호	
349	-	노룡동	420-2	답	553.0	-	노룡동	420-2	답	553.0	0.0	0.0	신*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50	-	노룡동	420-3	답	1,802.0	-	노룡동	420-3	답	1,802.0	0.0	0.0	신*용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51	-	노룡동	421-2	구거	151.0	-	노룡동	421-2	구거	231.4	80.4	0.0	국(기획재 정부)		
352	-	노룡동	421-3	구거	7.0	-	-	-	-	말소	0.0	7.0	국(국토교 통부)		
								421-9	구거	1,395.8			-		
								421-14	구거	116.5					
								421-15	구거	192.1					
								421-16	구거	2,493.8					
								421-17	구거	50.6					
								421-18	구거	1,291.6					
								421-19	구거	33.6					
								421-20	구거	67.5					
								421-21	구거	34.7					
353	-	노룡동	421-9	구거	8,890.0	-	노룡동	421-22	구거	42.8	0.0	1,409.0	국(농림축 산식품부)		
								421-23	구거	69.4			L 101)		
								421-24	구거	99.0					
								421-25	구거	247.3					
								421-26	구거	874.6					
								421-27	구거	215.8					
								421-28	구거	66.2					
								421-29	구거	74.3					
								421-30	구거	33.3					
								421-31	구거	82.1					
354	-	노룡동	421-10	도로	6.0	-	노룡동	421-10	도로	18.5	12.5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355	-	노룡동	421-11	구거	7.0	-	-	-	-	말소	0.0	7.0	국(국토교 통부)		
356	-	노룡동	421-12	도로	12.0	-	-	-	-	말소	0.0	12.0	국(국토교 통부)		
357	-	노룡동	421-13	구거	126.0	-	-	-	-	말소	0.0	126.0	국(국토교 통부)		
358	-	노룡동	426-3	도로	53.0	-	노룡동	426-3	도로	53.0	0.0	0.0	김*현	경상남도 삼천포시 신벽동 ***	
359	-	노룡동	426-4	도로	112.0	-	노룡동	426-4	도로	112.0	0.0	0.0	김*성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60	-	노룡동	434-2	도로	23.0	-	노룡동	434-2	도로	23.0	0.0	0.0	곽*형	경상남도 사천시 벽동길 **-**	
361	-	노룡동	435-2	도로	69.0	-	노룡동	435-2	도로	69.0	0.0	0.0	강*갑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	

362	-	노룡동	941-49	구거	16.0	-	노룡동	941-49	구거	12.7	0.0	3.3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363	-	노룡동	941-50	구거	41.0	-	-	1	-	말소	0.0	41.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364	-	노룡동	942	도로	192.0	-	노룡동	942	도로	185.0	0.0	7.0	국(국토교 통부)		
365	-	노룡동	943-1	도로	11.0	-	-	-	-	말소	0.0	11.0	국(국토교 통부)		
366	-	노룡동	948-1	도로	250.0	-	노룡동	948-1	도로	255.9	5.9	0.0	국(국토교 통부)		
367	-	노룡동	948-4	도로	35.0	-	-	-	-	말소	0.0	35.0	국(국토교 통부)		
368	-	노룡동	948-6	도로	53.0	-	-	-	-	말소	0.0	53.0	국(국토교 통부)		
369	-	노룡동	952-1	도로	4.0	-	-	-	-	말소	0.0	4.0	국(국토교 통부)		
370	-	노룡동	953-1	도로	111.0	-	-	-	-	말소	0.0	111.0	국(국토교 통부)		
371	용현면	주문리	68	답	640.0	용현면	주문리	68	답	640.0	0.0	0.0	송*자	경상남도 사천시 심포*길 **-**	
372	용현면	주문리	138	구거	382.0	용현면	주문리	138	구거	211.4	0.0	170.6	국(농림축 산식품부)		
373	용현면	덕곡리	235	답	1,423.0	용현면	덕곡리	235	답	1,423.0	0.0	0.0	이*옥(외 1명)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374	용현면	덕곡리	235-1	납	734.0	용현면	덕곡리	235-1	답	734.0	0.0	0.0	양*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	
375	용현면	덕곡리	235-2	답	662.0	용현면	덕곡리	235-2	답	662.0	0.0	0.0	양*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	
376	용현면	덕곡리	236	답	1,429.0	용현면	덕곡리	236	답	1,429.0	0.0	0.0	김*섭	경상남도 진주시 선학산길 ** A동 ****호	
377	용현면	덕곡리	236-1	답	1,179.0	용현면	덕곡리	236-1	답	1,179.0	0.0	0.0	이*희	경상남도 사천시 덕곡리 ***	
378	용현면	덕곡리	236-2	수도용 지	265.0	용현면	덕곡리	236-2	수도용 지	289.5	24.5	0.0	사천시(외 1명)		
379	용현면	덕곡리	237	답	934.0	용현면	덕곡리	237	답	934.0	0.0	0.0	이*희	경상남도 사천시 덕곡리 ***	
380	용현면	덕곡리	237-1	납	820.0	용현면	덕곡리	237-1	답	825.0	5.0	0.0	김*정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번길 *-*	
381	용현면	덕곡리	237-2	대	621.0	용현면	덕곡리	237-2	대	621.0	0.0	0.0	유*희(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	

ı	I I		l I		I	l				l I		I	1 1	I	1
382	용현면	덕곡리	237-3	답	481.0	용현면	덕곡리	237-3	답	481.0	0.0	0.0	곽*순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한들길 **-**	
383	용현면	덕곡리	237-4	수도용 지	152.0	용현면	덕곡리	237-4	수도용 지	144.4	0.0	7.6	국(환경부)		
384	용현면	덕곡리	266	답	466.0	용현면	덕곡리	266	· 답	466.0	0.0	0.0	임*순	경상남도 사천시 적례길 **	
385	용현면	덕곡리	266-1	답	297.0	용현면	덕곡리	266-1	답	297.0	0.0	0.0	대표 미지정(2명)		
386	용현면	덕곡리	266-2	답	1,081.0	용현면	덕곡리	266-2	답	1,065.0	0.0	16.0	대표 미지정(2명)		
387	용현면	덕곡리	266-3	답	1,222.0	용현면	덕곡리	266-3	답	1,222.0	0.0	0.0	윤*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 ****동 ***호	
388	용현면	덕곡리	266-4	답	1,345.0	용현면	덕곡리	266-4	답	1,345.0	0.0	0.0	김*숙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 ***동 ****호	
389	용현면	덕곡리	266-5	답	1,472.0	용현면	덕곡리	266-5	답	1,472.0	0.0	0.0	김*공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 ***동 ****호	
390	용현면	덕곡리	266-6	답	1,542.0	용현면	덕곡리	266-6	답	1,542.0	0.0	0.0	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길 **-**	
391	용현면	덕곡리	266-7	답	1,870.0	용현면	덕곡리	266-7	답	1,870.0	0.0	0.0	양*림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	
392	용현면	덕곡리	266-8	답	228.0	용현면	덕곡리	266-8	답	228.0	0.0	0.0	김*이	경상남도 사천시 송천길 **	
393	용현면	덕곡리	266-9	답	824.0	용현면	덕곡리	266-9	습	824.0	0.0	0.0	강*선	경상남도 사천시 임내길 ** ***동 ***호	
394	용현면	덕곡리	266-10	도로	113.0	용현면	덕곡리	266-10	도로	175.1	62.1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395	용현면	덕곡리	266-11	답	651.0	용현면	덕곡리	266-11	답	603.6	0.0	47.4	합****** *중	백천동 ***	
396	용현면	덕곡리	266-12	답	685.0	용현면	덕곡리	266-12	답	685.0	0.0	0.0	합****** *중	백천동 ***	
397	용현면	덕곡리	266-13	답	804.0	용현면	덕곡리	266-13	답	804.0	0.0	0.0	이*옥(외 1명)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398	용현면	덕곡리	266-14	답	1,804.0	용현면	덕곡리	266-14	답	1,804.0	0.0	0.0	이*현	경상남도 사천시 노대길 ***	
399	용현면	덕곡리	266-15	답	447.0	용현면	덕곡리	266-15	답	463.0	16.0	0.0	대표 미지정(2명)		
400	용현면	덕곡리	266-16	답	1,201.0	용현면	덕곡리	266-16	습	1,201.0	0.0	0.0	김*이	경상남도 사천시 송천길 **	
401	용현면	덕곡리	271-1	구거	1,829.0	용현면	덕곡리	271-1	구거	1,250.4	0.0	578.6	국(농림축 산식품부)		

제868호

사천시 공고 제2023-1794호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의무화와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68호

- 나. 적극행정 지원 심의 · 의결(안 제4조)
- 다. 변호인 ·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및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마. 지원의 취소 및 변호인 보수의 반환(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1,

FAX: 831- 6011)

사 천 시 궁 보

입법예.	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제868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 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4조(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천시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 2. 지원 시기 결정
 -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2,500만 원 이하 의 범위 내
 -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 · 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지방 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 의결하는 경우
-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 환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제5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68호

-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당 자 청	소속: 직급: 성별: 성명:
인 담당업무	
71 =1 -11 Ó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신 청 내 용	□ 변호인 선임 지원
기 게 시 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구비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 21/11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〇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	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
반하여 지원	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
함을 확약하	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사천시경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비 지원 신청서	
신 담 당 자 청	소속: 직급:	성별:	성명:
인 담당업무			
1	□ 변호인 또는 소송다	H리인 보수 지원(S	_청 금액 :)
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다	내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	년에 의견 제출	
	고소 · 고발 등		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약	일 관할 및 사건번호
·			
사건개요			
사신개호			
	□ 수사개시통보, 출석	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7.11.11.2	□ 변호인 또는 소송다	내리인 등의 선임계	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구비서류	□ 적극행정임을 소명	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〇	○○은 상기 내용이 모두	- 사실임을 확인하다	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
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
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	우 또는 이 지침에	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지원의 취소	· 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
분을 감수함	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언	걸 현	
		신청인 : ○	ㅇㅇ (인)
사천시경	∤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 소속	자 성명 (성별)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정 일	지원내용	징계결 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여	신청			사건관할		지원결정		수사 및	지원 취소	
연 번	소속	성명 (성별)	신청일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일	지원내용	소송결 과	・반환 등	비고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 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개정 2022. 12. 27.>
 -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 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 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2. 27.>

참고자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frac{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frac{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frac{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frac{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frac{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frac{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frac{0.5}{100}$]	0.5%

제868호

사천시 공고 제2023-1800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3. 9. 22. 시행) 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
- 사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인 공익신고자보호 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2.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6조)
 -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 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

제868호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비상설로 전환(안 제10조, 제11조)
 - 사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 '공익신고 등', '공익신고자 등'을 각각 붙여쓰기로 정비
 - 제15조제1항중 "별표 2"를 "영 별표 2"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

인	번	예	7	사 항 에	대 하	의 2	경 서
	Н	- "	<u> </u>	(1 O II	~ 1'	— I "	1

□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제86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 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에 따른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68호

제5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임"을 "공익신고자등임"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을 "공익신고자등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자 등에"을 "공익신고 자등에"으로, "공익신고자 등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신고자 등임"을 "공익신고자등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를 "공 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로 한다.

제7조 중 "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를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시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업무"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 다.
-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개 정 아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 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 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 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 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 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에 따른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 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 장은 <u>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u>이 나 그가 <u>공익신고자 등임</u>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u>공익신고자 등의</u> 동의 없이 공개하 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u>공익신고자 등에</u>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u>공익신고자</u>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 항이나 그가 <u>공익신고자 등임</u>을 미 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 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 <u>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u>
<u>공익신고자등임</u>
<u></u>
익신고자등의
② 공익신고자등에
공익신고자등
에게
_
· ③
공익신고자등임
<u> </u>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처리 결과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 은 <u>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u>에 큰 재 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 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략)
- 2. <u>공익신고자 등</u>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 3. ~ 7.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u>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u> 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
1. (현행과 같음)
2. <u>공익신고자등</u>
3. ~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원회는 <u>위원장</u>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생략)
-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팀장이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생략)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u>안건이 말생하면 위원상</u>
<u>구성하고 심의·</u>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u>보호업무 담당</u> ---

<u><삭 제></u>

⑥ (현행과 같음)<삭 제>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생략)

- 제14조(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깨 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u>공익신고자 등</u> 보호제도 홍보 3. <u>공익신고자등</u> -----

	승)
<u> </u>	<u><삭 제></u>
<u>-</u> .	
	③ (현행과 같음)
H	제14조(환경조성사업)
4	
}	
1	
}-	
	1.・2. (현행과 같음)

관 런 법 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2023. 3. 21.>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 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 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 는 조치
-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 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68호

사천시 공고 제2023-1801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신고 접수절차 시 안내문 추가(안 제13조)
 - 공익신고 접수증 교부 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추가 교부
- 공익신고의 조사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규정(안 제19조)
 -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통보

제868호

- 보상금·포상금 관련 지급사유, 지급대상, 신청기간 확대 및 지급 제한 대상 추가 (안 제30조, 제31조)
 -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
 -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및 환수'까지 확대
 -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
 - 보상금 지급 제한대상에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
 - 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부과'외에도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
-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32조)
 - 구조금 지급사유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831- 2226, FAX: 831- 6012

^1 천 시 공 보

제868호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	.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시	·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사천시 공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성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7-1		
내용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치	└ ·법」 제27조제 ⁻	⊥ 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제출인		년 월 일
٨ŀ	천시장	의전제물전 귀하		(서명 또는 인)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	유 의 시 ^불 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		
	등을 첨부하실 수			
3. 위 의견제 다.	출과 관련하여 문서	너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	H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니.			210mm×297mm[백	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868호

사천시 예규 제 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규정"을 "지침"으로, ""공직자"이"를 ""공직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정하여 1차에 한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천시가"를 "시장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868호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천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다.

제26조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 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8호

제28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 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를 "공익신고자등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지침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과 다른 규정"을 "지침과 다른 지침"으로, "규정"을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지침"으로 한다.

제868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이름			주민등특	루번 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소속				
	이름							
피신고자	소속			주소		알고 있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u>.</u>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신	사원, 수사기관, 고기관 : 사형사행정소송	신고일	:		조치결과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 ○ ○ 귀하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 .>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2x - 00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 .	
	성명				민등록번호 국인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고이시그	제목					
공익신고	접수일지	-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앞으로 구 있습니다 ⇒ [2. 수사기관 귀하의 산 절차를 기 동의하시	. 이 과정에서] 동의 만의 수사과정 신고사건이 수 거칠 수 있습니 겠습니까?	고사건에 대하 1 귀하의 신분 [] 부동의 사기관에 고빌	을 밝히 날되거나	거나 암시하는 경 건보에 송치되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나 암시하는 것에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 ○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 .>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신고자 주소 연락처 제목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접수번호

20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 ○ ○ ○ ○ ○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공익신고

접수일자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 .>

20	년	월	일	접수	
20) =	공익 저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	목												
담당부	서								담 당				
신고자 성	성명							피신	l고자성	명			
	조	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처 리	0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	기관			
	<i>결</i> .	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신 (대상:				
													1
신분공개		조사기관			수	사기	라				Ę	당당	공익신고책임관
동의여부										L	10	010116	
종 결 일 20 .								종결확인					
보존기간		년 (20 .		. 7.	가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mark>공공기관에</mark>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내부 공익신고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 나.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시실을 다른 시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조 제5항)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 ○ ○ ○ ○ ○ 귀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	간	9	10일
O ==1=1=1	추천기관명						
① 추천기관 	소관부서			(전화번	년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AL7	연 락 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소 속						
시티네이자	직업(직위)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약	익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성	상자로 추천함을 사	사전에 일	리고 동의를 구	함.		
③ 추천사유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등에 의한 보상금 및 ·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수령여부		[]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
			=	[] 없음	0.0.7.1		
'공익신고자 '	코호법」 제26조의2저	1항에 따른 포성	상금의	지급대상자들 -	위와 같이	주전합니	l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역	위		성명		(인)
	=	구민권익위원	회위원	년장 귀하			
※ 구비서류 및	및 작성요령 : 뒤쪽 침	·조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 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u>정의는 다음과 같다</u> .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u>
	<u>다</u> .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u><삭 제></u>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	<u><삭 제></u>
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	<u><삭 제></u>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u><삭 제></u>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	<u> <삭 제></u>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u> <삭 제></u>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	<u> <삭 제></u>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u>규정</u> 은 사천시 소	제3조(적용범위) <u>지침</u>
속의 공직자(이하 <u>"공직자"이</u> 라 한	<u>"</u> 공직자"
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u>시장</u> 은 공익신고자등	제5조(책무) ① <u>사천시장(이하"시장"</u>
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u>이라 한다)</u>

마런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 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생 략)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 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1. (생략)
-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3. 4. (생략)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	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u>접수증, 별지 제</u>
	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
	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② (현행과 같음)
제	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u>공</u>
	<u> 익신고</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2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u>정</u> 하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u></u>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	
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u>(공익신고의 조사)</u> ① (생 략)	제19조 <u>(공익신고의 조사 등)</u> ① (현행
	과 같음)
② <u>사천시가</u>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	② 시장이
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u>안내문을</u> 첨부한다.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③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	사건
<u>건</u> 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④ (생 략)

-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u>법 제9조제5항</u>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u>법 제9조제7항</u>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 ⑥ 사천시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생략)
-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 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사 천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 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 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 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⑤ <u>법 제9조제6항</u> -
<u>법 제9조제8항</u>
⑥ <u>시장은</u>
<u>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u>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략)
 -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u>제17조</u>까지를 준용한다.
 - ③ (생략)
-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u>시</u> <u>장은</u>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u>소속직원</u> 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u>시장은 소속직원이</u>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u>소속직원</u> 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 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 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시장은 <u>공익신</u> 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

<u>.</u>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2
<u>제19조</u>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u>누</u>
<u> 구든지 공익신고</u>
<u>자등</u>
<u>.</u>
② <u>누구든지</u>
<u>공익신고</u>
<u>자등</u>
③
공익
신고자등
,
제26조(신변보호 안내) <u>공익신고</u>
자등이

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경우에는 <u>공익신고자로</u>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생 략) <신 설>

- 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 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 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u>공익신고자</u>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 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 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

<u>공익신고자등으로</u>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
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
<u>\(\tau \) \(\tau \)</u>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u>공익신고자등</u>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고 이 가 ㅋ
<u> 공익신고자등</u>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u>공익신고자</u>에게 구 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 8. (생략)

-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u>국</u>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 1. ~ 6. (생략)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u>처분</u>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에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u>공익신고자등</u>
1. ~ 8.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u>공공기</u> 관
1. ~ 6. (현행과 같음) 7
- <u>판결</u> ㅇ 소ᅰ비사 ㄸ느 별다이드 바침 드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에 의한 환수
2
,
1. <u>공공기관</u>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 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에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 부터 5년 이내

<신 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u>국</u>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
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
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u>과태료 또는 과징금</u>의 부과처분 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u>3년</u>
2. <u>공공기관</u>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
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
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M31五(五 8 日 7 日 日 8 7 年 位 <i>)</i> ①
공공기
<u> 관</u>
1. ~ 3. (현행과 같음)
4. <u>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u>
<u>금 등</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 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된 비용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34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 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 지침과 다른 지침-----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 ② ---지침-----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을 우선 적용한다.

지<u>침</u>----.

관 련 법 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 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

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제품의 제조 · 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①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 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재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⑨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

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 야 한다.

-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 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포상금 등의 액수를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